



제 41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 등〉
■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95호)

2024.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1
IV. 검토의견	2
1.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 등(안 제3조 및 제5조 제2항)	2
2. 상임위원의 사무처장 겸임 규정 삭제 등(안 제4조제3항 및 제17조 제2항)	9
3.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칙 제4조)	13

※ 참고자료

1. 규제기관의 독립성 관련 국제기준	14
----------------------------	----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박충권의원 등 11인

나. 제출일자 : 2024. 6. 12.

다. 회부연월일 : 2024. 6.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이었으나,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또는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 모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원자력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마련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7조).

Ⅲ. 검토의견

1.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 등(안 제3조 및 제5조제2항)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안 제3조제1항), 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하며(안 제5조제2항),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원자력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u>국무총리</u>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 ----- ----- <u>대통령</u> ----- ----- -----.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u>3의2. 「원자력안전법」 제7조</u>

현행	개정안
4. (생략) 제5조(위원의 임명·위촉 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생략)	<u>의2제7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u> 4.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임명·위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대통령이</u>----- ----- ----- ----- ----- -----.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 등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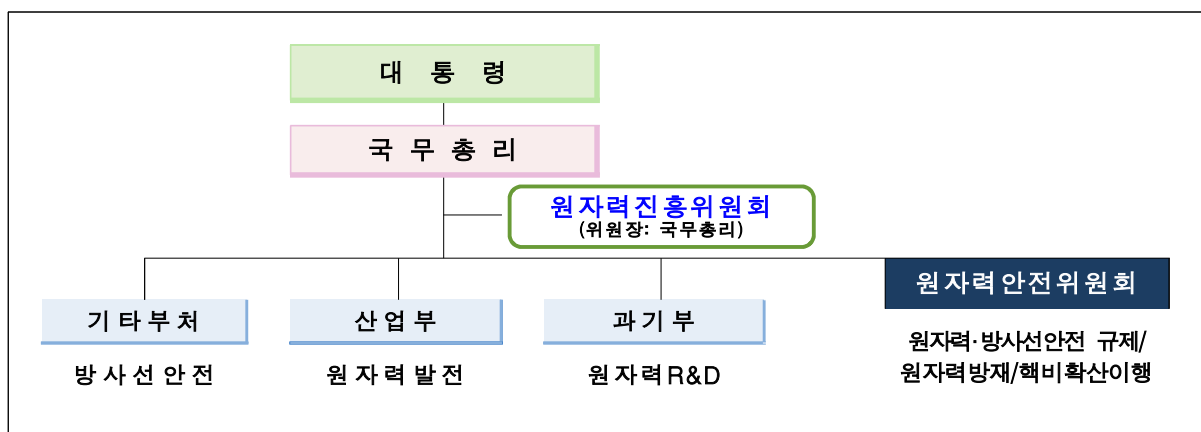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라 함)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반영하여 2011년 10월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인 장관급 기관으로 출범하였음¹⁾.

그 후 2013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최소화하는 방침에 따라, 원안위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이관하는 조직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원자력안전규제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에서 여야 간의 논의를 거쳐, 2013년 3월 원안위를 국무총리 소속 차관급 위원회로 개편²⁾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원자력 관련 거버넌스>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와 같이 당초 원안위는 대통령 소속 장관급 합의제 기관으로 출범하였으나 현재 원안위는 국무총리 소속 차관급 합의제 기관으로 출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0912호, 시행 2011.10.26. 제정 2011.7.25.)

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15호, 일부개정 · 시행 2013.3.23)

범 초기보다 그 위상이 낮아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원자력 진흥법」 제3조 및 제5조³⁾에 따라 원자력 생산·이용·연구개발 등 진흥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사항의 심의·의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차관급)이 담당하고 있어 원자력안전규제 업무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둘째, 원안위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있게 됨에 따라 원자력 진흥과 안전규제를 분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입장⁴⁾과도 배치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개정안 제3조제1항은 원안위를 현행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의 대통령 임명 시 국무총리 제청 절차를 삭제하려는 것으로(안 제5조제2항), 원자력안전규제 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로 이해됨.

이와 같이 원안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할 경우 ①과학기술정보

3) 「원자력 진흥법」 제3조(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외교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과 그 밖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참고자료 1. 규제기관의 독립성 관련 국제기준】 참조

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와의 실질적 업무 조율과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의 조직 위상이 보다 강화되고, ②규제기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국제규범에 부합하며 국제적인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원자력 안전관리 및 규제기능에 대해 현재도 국무총리 행정감독권의 예외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다수 부처 간 조정을 통한 종합적인 원자력 안전관리 및 재난 대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유지(국무총리 소속)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참고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또는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음.

<해외 주요 원자력안전규제기관 구성 현황>

구 분	한 국	미 국	프랑스	일 본
기관명	원자력안전위원회 (NSSC;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원자력규제위원회 (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원자력안전청 (ASN; Nuclear Safety Authority)	원자력규제청 (NRA; Nuclear Regulatory Authority)
위상	· 국무총리 소속 · 독립기관 · 차관급	· 대통령 소속 · 독립기관 · 장관급	· 독립기관 · 장관급	· 총리 소속(내각제) · 환경부 외청 독립기관 · 장관급
근거 법령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에너지 재조직법 (Energy Reorganization Act, 1974)	원자력 투명성 및 안보에 관한 법 (TSN Act, 2006)	원자력규제청 설치법 (2012)
위원 구성	· 위원 수: 9명 (상임2, 비상임7) · 임기: 3년(재임 가능)	· 위원 수: 5명(상임) · 임기: 5년(재임 가능)	· 위원 수: 5명(상임) · 임기: 6년(재임 불가)	· 위원 수: 5명(상임) · 임기: 5년(재임 가능)

구 분	한 국	미 국	프랑스	일 본
위원 추천· 임명 권한	·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 대통령 임명 ·4명(상임위원 포함) : 위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위촉 ·4명 : 국회 추천, 대통령 위촉	·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위원 중 1명을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임명 ·동일 정당에서 3인을 초과하여 선출 불가	·위원장 포함 3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상원과 하원이 각각 1명의 위원을 임명	·위원장 및 위원은 양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 총리대신이 임명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 국무총리 행정감독권의 예외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추가

현행법 제3조제2항⁵⁾은 원안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인 「정부조직법」 제18조⁶⁾의 예외로 원안위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임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정 이후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재단⁷⁾ 임원 인사에

- 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5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9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 선임 및 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안전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6) 「정부조직법」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7)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①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안전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원자력안전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연구
 2.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3.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예외에서 누락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 제3조제2항은 원안위의 독립성 강화와 원안위 소관 다른 공공기관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 행정감독권의 예외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 4. 제106조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5. 제107조의2에 따른 국제협력 지원
 -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및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안전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④ 안전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⑤ 안전재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⑥ 안전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 ⑦ 안전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⑧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⑨ 안전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2. 상임위원의 사무처장 겸임 규정 삭제 등(안 제4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상임위원인 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정부위원에 사무처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u>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u>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상임위원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은</u> ----- ----- -----.
제17조(사무처) ① (생략)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u>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한다.</u> ③ (생략)	제17조(사무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위원장이 임명한다.</u>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원안위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하고(제17조제1항), 정부위원이 되며(제4조제3항),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5조제2항).

원안위 출범 당시⁸⁾에는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부위원장을 두면서 별도의 사무처장을 두었으나, 현재는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임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 3년 임기⁹⁾인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 만료 후 사무처장 공석으로 행정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¹⁰⁾,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무처장의 역

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0912호, 2011. 7.25. 제정)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에는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9)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0) 원안위 역대 위원장 및 사무처장 현황

	위원장	사무처장
1대	강창순 (`11.10.26~`13.03.22)	손재영 (`11.10.26~`13.05.14)
2대	이은철 (`13.04.15~`16.04.14)	김용환 (`13.05.15~`16.04.14)
		공백 `16.04.15.~`16.06.08.(약 1개월 반)
3대	김용환 (`16.04.15~`17.12.29)	최종배 (`16.06.09~`18.01.30)
		공백 `18.02.01.~`18.02.08.(8일)
4대	강정민 (`18.01.02~`18.10.28)	엄재식 (`18.02.09~`18.12.14)
		공백 `18.12.15.~`19.06.20.(약 6개월 반)
5대	엄재식 (`18.12.15.~`21.12.03.)	장보현 (`19.06.21~`22.06.19)

할¹¹⁾과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해야 하는 상임위원의 역할¹²⁾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상임위원인 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원안위의 사무처장과 상임위원의 지위를 분리하고,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별도로 임명하도록 변경하되, 현행과 동일하게 정부위원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사무처장과 상임위원을 분리할 경우, 원안위 사무처 업무관리가 효율화되고, 원안위 안전에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정부위원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내용으로 보여짐.

다만,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위원회 수행 기능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조직 확대 및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원안위도 작은 정

		공백 '22.06.20.~'22.08.15.(약 2개월)
6대	유국희 (`21.12.04.~현재)	임승철 (`22.8.16.~현재)

※ 2대부터 상임위원이 사무처장 겸임

1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사무처)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12) 일반적으로 매달 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개최됨.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현황(2021~2024. 7.)>

연 도	2021	2022	2023	2024. 7. 현재
개최횟수	20	19	19	8

부를 지향하는 정부 기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정부 내 통일된 입장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른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을 상임위원과 별도로 임명하고 있음.

<국내 합의제행정기관 위원구성 비교>

구분		원자력 안전위원회	방송통신 위원회	국가인권 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 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속		국무총리	대통령	독립기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국무총리
상 임 위 원	위원장	1 (차관)	1 (장관)	1 (장관)	1 (장관)	1 (장관)	1 (장관)
	부위원장	-	1 (차관)	-	1 (차관)	1 (차관)	1 (차관)
	위원	1 (고위공무원)	3 (차관)	3 (차관)	2 (고위공무원)	3 (고위공무원)	-
비상임위원		7	-	7	5	4	7
전체위원		9	5	11	9	9	9
사무처장		겸임	별도	별도	별도	별도	별도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3.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칙 제4조)

가. 개정안의 내용 및 검토의견

개정안 부칙 제4조는 원안위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되는 개정안의 내용에 맞추어, 현행 관련 법률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도록 문구를 정리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 중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하도록 한 문구가 개정안 내용에 빠져있으므로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수정안
부 칙	부 칙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생략) 제53조제1항 단서·제2항 전단·제3항 본문, 제54조제1항제6호(이하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 -----.(개정안과 같음) ----- -----제53조의2제1항·제4항, 제54조제1항제6호-----

문 의 처

02)6788-5231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본안전원칙(IAEA Safety Fundamentals)

- IAEA 안전기준의 최상위 문서로서 총 10개의 대원칙을 명시하고, 그 중 2번째 원칙으로 “Principle 2 : Role of government(정부의 역할)”에 규제기관의 독립과 구별을 규정

※ 3.10(규제기관의 사업자로부터의 독립), 3.11(사업자가 정부기관인 경우의 규제기관과 독립하거나 구별)

<IAEA Safety Fundamentals>

IAEA Safety Fundamentals(sf-1)

“Principle 2: Role of government

“ An effective legal and governmental framework for safety, including an independent regulatory body, must be established and sustained.

- 3.10. The regulatory body must be effectively independent of the licensee and of any other body, so that it is free from any undue pressure from interested parties;

- 3.11. In the event that the licensee is a branch of government, this branch must be clearly identified as distinct from and effectively independent of the branches of government with responsibilities for regulatory functions.

원칙2: 정부의 역할

“독립적 규제기관을 포함, 원자력 안전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법한 정부 체계가 반드시 수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3.10 규제기관은 사업자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독립되어야 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압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3.11 사업자가 정부 기관일 경우, 이 기관은 규제 책임을 가진 정부 기관으로부터 분리되었음이 명확히 식별되어야 하며 이들로부터 효과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 IAEA 원자력안전협약(CNS, Convention on Nuclear Safety)

- CNS는 총 80개국('19.9월 기준)이 체약국으로 참여한 원자력안전 국제협약으로서, 제8조에서 규제기관과 진흥기관의 분리 명시
- ※ 1항(규제기관의 지정), 2항(규제기관과 진흥기관의 분리)

<Convention on Nuclear Safety>

ARTICLE 8. REGULATORY BODY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stablish or designate a regulatory body entrust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legisl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 referred to in Article 7, and provided with adequate authority, competence and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to fulfil its assigned responsibilities.
2.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the appropriate steps to ensure an **effective separation between the functions of the regulatory body and those of any other body or organization concerned with the promotion or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제8조 규제기관

1. 각 체약당사자는 제7조에 언급된 입법 및 규제체제의 이행을 위임받고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권한, 능력, 자원 및 인력을 부여받은 규제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규제기관의 기능을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 또는 증진과 관련된 어떠한 다른 기관이나 조직의 기능과 효과적으로 분리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